제325회 정례회
2013.12.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12.20.(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최진섭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 2013년 12월 02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12월 04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2월 11일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유인물로 대체)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물자 절약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및 위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3) 교복나눔운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
4)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 사업 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5)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6) 교복나눔운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안 제7조)
7)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포상근거 마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 : 유인물로 대체)

○ 본 조례안은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구입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물자절약 및 자원재활용 정신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에 교육감이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은 교복나눔운동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복나눔운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6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과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참여한 학생에게 인센티브와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교복나눔운동 확대와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비영리 민간단체에 교복나눔운동 업무를 위탁 할 경우, 위탁과 경비지원, 관리의 방법, 범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명확한 업무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위탁받은 민간단체와 학교현장에서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학생과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기증한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교환 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2. 추진 및 지원사업의 위탁 여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운동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참여 학생 인센티브)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참여 한 학생에게 표창, 그 밖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조례 제3474호, 2012.6.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